

조선시대 양로연(養老宴)에 대한 고찰

한복진

전주대학교 문화관광학부 전통음식문화 전공

A Study of Ceremony for the Elderly (Yangroyun) in Chosun Dynasty

Bok-jin Han

Dep. of Traditional Food Culture, Jeonju University

Abstract

Yangroyun(養老宴), the ceremony for elderly people, originated with the ancient Chinese, but the ceremony was held as almsgiving in the early period of Three Kingdom - Shilla · Goguryo · Baekje. During the period, a king participated in the ceremony and gave elderly people grain and cloth. Also, in the unified Shilla dynasty, as it were. According to establish the aristocracy in the Three Kingdom period, Yangroyun became the royal ceremony. In Goryeo dynasty, Yangroyen was developed as a ceremony for awarding a person with filial piety prizes. In Chosun dynasty, Yangroyun was performed in the rigid regulation. It was begun from the king Sejong. According to 『Kyungkukdaejeon(經國大典)』, Yanroyun was held in September of the lunar year for over eighty years old, and queen held a banquet for the wives of the elderly. According to 『Chosunwangjosilrok(朝鮮王朝實錄)』, 『Gisaji(耆社志)』, and 『Jungbomunhunbigo(增補文獻備考)』, Yangroyun held totally eighty times in Chosun dynasty, however, in the late Chosun dynasty, Yangroyun was held few times.

Key words : Yangroyun(養老宴), elderly people, almsgiving, Chosun dynasty.

I. 서 론

과학의 발달에 따른 의료기술의 진보와 사회·경제적 수준의 향상으로 노인 인구의 비율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2002년 현재 전 인구의 7.9%이며, 2020년에는 15.1%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구의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지만 핵가족화 및 기혼 여성의 취업증가가 족내의 효(孝)에 대한 의식 감소 등은 노인 문제의 우려를 놓고 있고, 사회적인 관심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노인에 대한 경로 정신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선조들의 경로 행사를 통하여 조상이나 노인에 대한 효(孝)사상을 본받아야 하겠다.

인간은 소위 오복(五福) 중에서도 수(壽)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였다. 이는 오래 생존하려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에서 뿐 아니라 “대덕심득기수(大德心得其壽)”라고 하여 수(壽)와

덕(德)을 대등시 하는 가치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장수한 노인은 ‘달전(達奠)’이라고 하여 뜻 사람들은 모두 섬겨 받들었고, 노인 공경을 천하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하였다. 이에 고대로부터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막불이양로위중(莫不以養老爲重)”이라 하여 양로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왔다.

양로의 의미는 그 노(老)를 귀중히 여기고 신분의 준비(尊卑)를 문제삼지 않았으므로 천인들도 사대부와 서인 기로(耆老)와 함께 연회에 참석할 수 있었다. 이러한 원칙은 가자제(加資制, 정삼품 통정대부 이상의 품계를 올리던 일)에도 적용되었다. 이는 모든 기로에 대한 예우가 귀천에 관계없이 운영되었음을 말하는 것으로, 조선이 신분제 사회인데도 조선왕조에서 실시된 기로정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가 양로연이었다.

현재까지 학계에는 양로연에 관련된 연구 논문은 거의 찾아 볼 수가 없으나, 박의 『조선시대 기로정책의 연구』(박상

환 2000)는 우리나라의 기로(양로)정책을 전반적으로 알 수 있는 저서이고, 궁중문화재현행사 고증 연구 총서인 김 등의 『조선시대 양로연의례와 어연의례의 연구』(김두진 1997)는 조선시대의 어연과 양로연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궁중음식문화의 실증적인 자료를 규명하고자하는 일련의 연구로서 본고에서는 양로연의 유래와 역사적인 고찰, 그리고 고려와 조선시대의 사료를 근거하여 양로행사와 양로연의 실제 내용을 고찰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역대 왕조의 경로에 사상을 살펴볼 수 있고, 조선시대 식생활 문화에서 노인에 대한 배려와 경로연에 차린 음식을 통하여 노인식의 원천을 밝힐 수 있는 계기의 한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II. 본 론

1. 양로연의 역사

1) 양로연의 기원

양로연의 기원이 중국 고대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여러 문헌(유형원 원저 1991, 정약용 원저 1998)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목민심서』에 “옛날 예법에 대부(大夫)로서 기로(耆老, 나이가 많아 벼슬을 물려난 경대부)가 된 이를 국로(國老)라 이르고, 서인(庶人)으로 기로가 된 이를 서로(庶老)라 일렀다. 유우(有虞, 중국 고대 순임금)씨는 서로를 하상(下庠, 순임금 때 소학교)에서 봉양했고, 하후(夏后, 중국 고대 우임금)씨는 서로를 좌학(左學)에 봉양했으며, 주나라에서는 서로를 교상(郊庠)에서 봉양했으나, 요즈음 수령은 오직 서로를 봉양해야 한다.” 하였고, “봄에는 어린 아이를 위한 잔치를 베풀고, 가을에는 쇠약한 늙은이들을 먹인다” 하였다.

임금이 시학(視學)하 때에는 공자묘에 참배하는 의식이 있는데 절차는 지금 알성(謁聖)시의 의식과 같다. “『예기』에 의하면 천자가 시학을 한 다음 해당 관리로 하여금 전례에 의해 공자묘에 제사를 지내게 한다. 관리가 제사를 마치고 복명을 하면 천자가 동서(東序)에서 선로(先老, 죽은 노인)들에게 제사를 지낸 다음 삼로(三老, 주 되는 노인)와 오경(五更, 다음 가는 노인), 여러 노인들의 자리를 정한다고 하였다 (유형원 원저 1991). 음식 장만하는 곳에 가서 노인들에게 접대할 술과 모든 맛있는 음식들을 살펴본다. 그리고 풍악을 갖추어 영접한다. 이는 참가한 학사들로 하여금 물러가서 자신도 노인들을 이렇게 섭기도록 하는 것이니 이것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도리로써 노인을 대접한다는 의미이다.”(유형원

원저 1991).

『예기』에 순임금은 심의(深衣, 높은 선비가 입던 옷옷)를 입고 노인을 접대하였는데, 국로(國老)를 상상(上庠, 주나라 때 학교)에서, 서로(庶老)를 하상(上庠)에서 접대하고, 또 그들에게 보통 예절의 잔치를 베풀었으니 그것이 가장 좋은 예절이었다. 그 때에는 노인들의 도덕을 본 뜨고 노인들의 건강을 고려하여 접대하기만 하고 노인들에게 좋은 말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으며,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것을 기록하여 돈사(惇史, 효도하고 인후한 역사)를 만들었다. 또 《하우(夏禹)씨는 보통 겸은 옷을 입고 노인들을 접대하였는데 국로를 동서(東序)에, 서로를 서서(西序)에 모아놓고 큰 잔치를 배설하여 대접하였으며, 은나라 사람은 흰옷을 입고 노인을 대접하였는데 국로를 우학(右學)에, 서로를 좌학(左學)에 모아놓고 음식으로써 대접하는 예절을 행하였다. 주나라 제도에는 겸은 옷옷과 흰 아래옷을 입고 노인들을 접대하였는데 주나라에서는 우(虞) 하(夏) 은(殷) 3대의 연향 예절들을 다 참작하여 시행하였다. 하관(夏官) 나(羅)씨가 2월 봄에 새를 잡아서 비둘기를 천자에게 바쳐 국로를 대접하였다. 월령에 의하면 8월에 천자가 노인들 쇠한 사람들을 접대함에 있어서 그들에게 궤(几, 안석)와 지팡이를 주고, 또 부드러운 국을 먹이는 의식을 행한다. 50세 된 노인은 태학에서 접대하는데 이 예절은 천자로부터 제후에 이르기까지 동일하다. 80세 된 노인은 임금의 명령을 받을 때에 한 번 앓아서 머리를 두 번 숙이며, 90세 된 노인은 다른 사람을 시켜서 명령을 받았다. 임금이 태학에 가서 시학할 때에는 반드시 노인은 접대하는데 좋은 말을 청하거나 음식을 대접하는 절차는 소악정(小樂正)이 임금에게 말하여 동서(東序)에서 거행했다. 한나라 은나라 주나라의 양로의식에는 연령이 높은 사람을 본위를 하였다”라고 하였다.

중국에서는 양로연은 전설시대부터 있었고, 기록이 남아 있는 은나라에서는 기원전 1600년대부터 노인공경의 예로써 양로연이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삼국시대의 양로연

기로(耆老, 80세 이상 늙은이)를 섭기고 봉양하는 것이 인간사회的基本 윤리라고 한다면 양로는 유사 아래 인간의 기본적인 경로행사로서 전해 내려왔을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에는 유교가 전래되어 양로(기로)정책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강조되기 시작하였고, 『삼국사기』, 『삼국유사』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기로정책이 구체적으로 시행되었다가 보다는 진휼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박상환 2000).

삼국시대에 어연(御宴)이나 궁중연회가 빈번하게 베풀어졌는데, 그 절차가 소상하게 알려져 있는 않다. 대체로 풍악이 있었으며 술이 몇 차례 돌아 흥이 둘구어지면 으레 춤이 따랐던 것 같다. 이때의 춤은 신하들이 추기도 하지만 왕 자신이 스스로 추기도 했다. 그런 과정에서 왕은 특정한 신료에게 금잔으로 술은 따라 권하기도 하고 폐백을 내리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신료들도 연회를 통해 왕에게 선물을 올리기도 했다(김두진 1997).

삼국시대에는 왕이 임재하여 행하는 연회 중에 양로연이 자주 베풀어졌다. 신라 늘지왕 7년(423)에 남당에서 양로연을 열고 왕이 친히 곡식과 웃감을 내렸다고 한다. 이외에는 신라에서 양로연을 거행한 기록은 없지만 양로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다. 행사는 주로 왕이 지방을 순행(巡幸)할 때 노인과 스스로의 살아갈 수 없는 자(自存不能者)를 위문하고 곡물과 폐백(布帛)을 하사하는 것인데 모두 진휼책이었다(박상환 2000).

고구려에서는 신라와 마찬가지로 스스로의 살아갈 수 없는 자에 대해 국가에서 사물로써 진휼하거나(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왕의 순행시 노병자들을 위문하는 예가 있었다(삼국사기 고구려본기).

백제에서는 다루왕과 비루왕 때 가난하고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자에 대한 진휼(삼국사기 백제본기)을 행하였지만 노인의 대우에 대한 관한 기록은 없다.

통일신라시대에는 보다 기로정책이 구체화되어 양로사례로서 주식(酒食)이나 곡물, 폐백 등을 하사한 기록이 있다(삼국사기 신라본기). 신라는 반도를 통일하여 왕권의 전제화로 귀족 세력을 과감히 숙청하고 관료제도를 정비하였다. 신라에서는 기신(耆臣)을 치사하게 하고 열로한 국로나 치사에게 궤장(几杖)을 내리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고대 사회는 연장자(年長者)에 의해 사회적 처지가 구분될 수 있기 때문에 고령자나 연장자를 위로하는 연회는 덕치(德治)의 표현으로 널리 행해졌을 것이다. 따라서 통일 신라 시대에 연장자에게 주식(酒食)을 내리는 것 자체가 양로연의 연장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삼국시대에 양로연 의례에 구체적인 진행모습을 알려져 있는 않지만 비교적 다양하게 행해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본래 읍락(邑落) 단위로 행해지던 제의가 연맹왕국이 성립되면서 제천(祭天)의례로 체계화되었고, 그 뒤에 왕족 중심의 귀족 국가체제가 확립되면서 국가적인 사전(祀典)이 갖추어졌다. 그리하여 양로연 의례가 궁중의례로 성립되어 갔다.

3) 고려시대의 양로연

삼국시대에 진휼적인 차원에서 행해진 기로(耆老)에 대한 양로 사례는 고려시대에 이르러 보다 다양화 구체화되었으며, 사물(賜物) 행사가 활발히 전개되었다(박상환 2000). 모처(母妻)의 나이가 80세 이상인 자에게는 품(品)에 따라 미포(米帛)등을 하사하고, 80세 이상의 노인과 질병에 걸린 자에게도 역시 물건을 하사하였다. 100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4품관의 경관(京官)이 일일이 그 집을 방문하도록 하였다(고려사 권3).

고려시대의 양로연에 관해서는 「노인사설의(老人賜設儀)」(노인들에게 선물을 주며 연회를 베푸는 의식)(고려사 권68)에서 그 시작을 볼 수 있는데, 효행자에 대한 포상 행사와 더불어 시행되는 것이 상례였다. 이는 철저한 유교적인 효경사상에 근거를 둔 것으로 왕이 친히 임하여 친향(親饗)을 베풀어 사물 등으로써 포상해 주었다. 왕이 노인들에게 선물을 주며 베푸는 양로 연회 의식은 80세 이상의 전직 신료들을 부르고 아울러 효자나 효손들을 참석시켰고, 의식이 끝나면 이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왕이 승제로 하여금 음식을 권하며 참석자에게 차등 있게 선물을 주었다. 이외에도 왕은 전직 관료뿐 아니라 100세 이상 된 사람을 위문하기도 하며, 80세 이상의 백성들을 알아내게 하여, 그들을 궁중에 불러 연회를 베풀었을 뿐 아니라 태자에게 명하여 음식을 권하기도 했다(김두진 1997).

고려시대에 기록에 남아 있는 양로행사는 표 1과 같다. 『고려사』에는 목종 7년(1007) 7월, 숙종 6년(1101) 3월, 동7년 10월, 회종 4년(1208) 10월에 베푸 양로 행사의 기록이 상세히 남아있다. 그리고 회종 4년에는 그간 국가에 사고가 많았던 탓으로 노인을 초대하는 예식이 오랫동안 중단되었다가 다시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고려시대 궁중에는 열린 양로 행사 중에는 친향(親饗), 향연(饗宴), 사연(賜宴) 등이 포함되어있다. 이중 친향은 문종5년·동 37년, 숙종 7년, 예종 원년·동 5년·동 6년·동 8년·동 22년, 인종 원년·동 14년·동 17년 2회, 의종 원년, 회종 4년 등에 열렸고, 향연은 선종 2년, 인종 4년·동 6년, 고종 11년 등 4회 열렸고, 사연은 문종 11년 1회 개최되었다(박상환 2000). 기로를 대상으로 한 이같은 연회를 베풀어지기 시작한은 성종 10년(992) 이후의 일로 짐작된다(고려사 권3).

한편 양로행사에서 예물로 쓰인 식품을 다음과 같다.

목종·숙종 대에 식품은 술·차·음식 등인데 구체적인 표기가 없어 그 내용을 확실히 밝힐 수는 없다. 회종 대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술 10잔·과일 10접시·음식 13그릇·인삼 10량·현미 2석·벼 등이 표기되어 있으며 이 예물들이 품계에 따라 달리 지급되었는데 술은 10잔에서 6·4·3잔으로 감소하고, 과일은 10접시에서 9·5·3접시로, 음식을 13그릇에서 12·6·4·3그릇으로 차등을 두어 지급하기

표 1. 고려시대 양로 행사(증보문헌비고 권83, 고려사 권68)

연대	대상 인물	주식(酒食) 대접과 예물
성종9년(990)	<서경>入流한 관원 및 그들의 어머니와 아내의 나이로 80세 이상, 위독한 병자	-왕이 서경에 거동하여 품계에 따라 물품을 하사하였다. -.0세 이상과 병이 위독한자는 쌀과 베를 하사, 1백세 이상은 京官4품으로 하여금 그집을 위문하게 하였다.
성종10년(991)	80세이상 노인, 부모 친척없는 아이로 병자	-벼를 주어 구휼하게 하였다.
목종7년(1007) 7월	민간 남녀 80세 이상 및 위독한 병자 · 병신635명	-왕이 구정(毬庭)에 나와 모아놓고, 왕의 임석하였다. -.술 · 베와 비단 · 차 · 약 등을 차등 있게 주었다.
현종2년(1011) 8월	노인	-노인에게 음식을 먹이고, 궁민에게 물품을 하사하였다.
현종12년(1011)	<경성>90세 이상 남녀	-.酒食 · 茶菓 · 布帛을 하사하였다.
현종20년(1011)	<해주>지나가는 州縣의 늙은 이과 중병자	-.酒食 · 布貨를 하사하였다.
정종3년(1037)	國老	-왕이 친히 음식을 대접하였다.
정종5년(1039)	귀화인과 没蕃懷土의 남녀 노인80여명 · 어린이	-.大寒때 紵布를 하사하라 명하였다.
문종원년(1047)	80세이상 벼슬있는이 · 孝子 · 順孫 · 義夫 · 烈婦늙은흘아비 · 舊母 · 늙은과부 · 폐질자	-.물품을 하사하였다.
문종3년(1049)	80세이상 국로 3명 · 孝子 · 順孫 · 義夫 · 烈婦늙은흘아비 · 舊母 · 은과부 · 폐질자	-왕이 친히 나와 閣門에서 국로들에게 음식과 술을 권하고, 의복과 뇌원 차를 주었다. -.이튿날은 나머지 사람들에게 물품을 내렸다.
문종13년(1059)	80세이상 국로 2명 · 서로와 孝子 · 順孫 · 義夫 · 烈婦늙은흘아비 · 舊母 · 늙은과부 · 폐질자 1280명	-왕이 친히 나와 국로들에게 花酒를 권하고 의복을 하사하였다. -.나머지 사람들에게 布와 酒食을 하사하였고, 여러 고을에도 같은 날 포를 내렸다.
선종2년(1085) 7월	국로	-음식을 대접하였다.
선종7년(1090)	백세 ,80세 노인3명	-왕이 삼각산에 거동하여 3인을 보고 물품을 하사하고 위문하였다.
현종원년(1094)	국로	-왕이 친히 음식을 대접하고, 물품을 하사하였다.
숙종원년(1096)	국로	-왕이 친히 음식을 대접하고, 衣幣 · 布帛을 하사하였다.
숙종6년(1101) 3월	國老	-왕이 친히 음식을 대접하였다.
숙종7년(1102) 10월	<서경>80세 이상 노인	-궁정에서 잔치를 베풀고 태자에게 명하여 음식을 대접하였다. -.예물: 차등있게 주었다.
예종원년(1106) 9월	80세 이상 노인	-궁정에서 잔치를 베풀고 왕이 친히 음식을 대접하였다. (특별히 임성개에게 견여를 타고 大內에 들어보게 하였다.) -.예물: 의복을 하사하였다.
예종5년(1110)	80세 이상 노인 · 효순 · 절의 · 환과고독	-남문밖에서 향연하였다. -.예물: 물품을 하사하고, 효자 1인에게 하사를 도하고 왕이 시를 지어주었다.
예종6년(1111)	국로 · 서로	-왕이 친히 음식을 대접했다. 서로는 궁정에서 음식을 대접하였다.
예종10년(1115)	국로	-왕이 친히 음식을 대접했다.
인종원년(1123)	80세 이상 노인 · 효순 · 절의 · 환과고독	-궁정에서 잔치를 베풀고 왕이 친히 음식을 대접하였다.
인종6년(1128)	노인	-天文에 이변이 있어 詔하여 노인에게 음식을 대접하였다. -.예물: 물품을 하사하였다.
인종22년(1144)	노인 · 효순 · 절의 · 환과고독	-노인에게 왕이 친히 음식을 대접하였다. -.예물: 물품을 하사하였다. 효자에게 행실을 물었다.
명종25년(1195)	<水州>정곡촌104 여로	-자손95명이 모두 요역에 이바지한다는 것을 듣고 곡식30석 하사

표 1. 고려시대 양로 행사(증보문헌비고 권83, 고려사 권68) (계속)

회종4년(1208) 10월 을해일	왕은 초대된 재신과 추밀관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술 10잔 · 과실 15접시 · 음식 13그릇씩 대접한다. - 예물: 복두사 2매 · 생문라 1필 · 후라 1필 · 의릉 2필 · 향대견 2필 · 정제면 2근 · 요 대은 1근 · 금 한눈 5도 · 홍정피 1벌 · 인삼 10량 · 꽃 8가지 · 홍립초 3자루 등을 누른 비단보에 5매에 싸서 선사한다.
	3품관을 지낸 노인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술 10잔 · 과실 14접시 · 음식 12그릇씩 대접한다. - 예물: 복두사 2매 · 생문라 1필 · 후라 1필 · 의릉 2필 · 향대견 2필 · 정제면 2근 · 요 대은 12량 · 금 한눈 5도 · 홍정피 1벌 · 인삼 10량 · 꽃 6가지 · 초 2자루 등을 누른 비단보에 5매에 싸서 선사한다.
	재상 · 추밀관과 3품관의 어머니 또는 아내와 3품관의 절부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술 10잔 · 과실 14접시 · 음식 12그릇씩 대접한다. - 예물: 의릉 2필 · 향대견 4필 · 정제면 2근 · 인삼 10량 · 꽃 6가지 · 초 2자루 등을 누른 비단보에 3매에 싸서 각자에 선사한다.
	퇴직관리로 80세에 미만 4품관과 80세 이상 참상원 · 참의원과 직책 유무자 중 · 속인, 효자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품 참상원에 대하여는 매 사람에게 술 6잔 · 과실 9접시 · 음식 6그릇씩 대접 한다. - 예물: 광평포 1필 · 솜 10량씩 선사한다.
	참의원과 직책을 가졌거나 혹은 갖지 못한 중 · 속인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술 6잔, 과실 5품 · 음식 6그릇씩 대접한다. - 예물: 직책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소평포 5필 · 솜 10량씩을 선물하고, 직책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물은 소평포 5필 · 솜 6량씩을 선물하고, 효자들에게는 술 · 과실 · 음식을, 중이나 속인과 동일하게 대접하되 직책이 있는 사람에게는 광평포 10필 · 현미 2석씩을 선사한다.
	80세 달한 직함있는 여자 또는 직책유무 막론하고 절개를 지킨 부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술 6잔 · 과실 5품 · 음식 6그릇씩 대접한다. - 예물: 쌀 1석씩을 주는데 도감의 직원을 시켜 이것을 보살펴주게 한다.
	늙은 흘아비 · 늙은 과부 · 고아 · 자식이 없는 늙은이 · 병신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술 4잔 · 과실 5품 · 음식 4그릇을 대접한다.
	<서경> 80세에 달한 남녀 · 효자순손 · 늙은 흘아비 · 늙은 과부 · 고아 · 자식없는 늙은이 · 병신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술 · 과실 · 음식 등을 매 사람마다 3그릇씩 대접한다. - 예물: 80세에 달한 남녀에게는 베 3필씩을, 효자 순손에게 베 7필씩을, 늙은 흘아비 · 늙은 과부 · 고아 · 자식없는 늙은이 · 병신들에게 베 1석씩 준다.
	<동서남북계(界,道)>효자 · 순손 · 80세이상 노 남녀 · 늙은 흘아비 · 늙은 과부 · 자식없는 늙은이 · 병신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술 · 과실 · 음식 등을 매 사람마다 3그릇씩 대접한다. - 예물: 효자 순손에게 베 6석씩을, 80세에 달한 남녀와 늙은 흘아비 · 늙은 과부 · 자식없는 늙은이 · 병신에게는 각각 베 1석을 준다.
충숙왕12년(1325)		전교하기를 “90세 이상은 관에서 식량을 주며, 80세 이상은 시장 1인을 주어 그의 신역을 면제하여 주고, 환과고독 · 폐질자에게는 관사에서 우대하여 구휼하라”하였다.

도 하였다.

4) 조선시대의 양로연

조선왕조에는 고려시대에 설시(設施)된 양로연회가 한층 법률화 · 제도화되었고, 정치 · 사회적으로는 기로정책의 다양화와 더불어 국가적 중요행사로서 비중을 더해갔다. 양로연을 단순한 연회가 아니고 엄격한 의례 절차에 준하여 거행되었고 특히 양로의 뚜렷한 의미를 부여하였다.

조선왕조는 개신 유학을 통치이념으로 삼아 모든 국가적 예의식, 행사를 규정하고 사회의 기강과 질서를 바로잡고자

하였다. 특히 세종은 개국 아래의 제례(制禮)작업에 뜻을 세우고 오례의를 편찬에 착수하였으나 당대에 완성을 보지 못하고 성종 대에 이르러 완성되었다. 하지만 양로연의 제정은 이미 세종대에 이루어졌고 이후 역대의 양로연의는 세종 때 제정된 예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으며(증보문헌비고 권76), 이는 양로연은 하나의 제도로서 정착되어 조선 말기까지 지속되었다.

태조는 기로정책을 왕정의 최우선으로 하여 양로연도 실시하였다(태조실록 권1). 세종 대는 매년 연초에 쌀 · 술 · 고기(酒肉)를 내렸을 뿐 아니라 그리고 조선 전 시대에 걸쳐

역대 군왕들의 치교(治教)의 한 방편으로 실시되었다. 즉 양로연은 비록 기근이 드는 경우에도 변함 없이 시행되어야 할 국가의 중대사로 여기고(증보문헌비고 권83), 다른 연회와도 비할 수 없이 인군이 행해야 할 당위적인 것이라 조정이 떳떳이 지켜야 할 도리로서 효를 일으키는 것을 중시하였다(증보문헌비고 권83).

조선시대 영조 대의 『반계수록』에는 “양로하는 의례는 매년 가을(혹 봄에)에 임금이 성균관에서 시학(視學)할 때에 양로의례를 행하는데 이때 전국 노인들에게 쌀과 고기를 하사한다.(80세 노인과 90세 노인에게 각각 차등이 있게 주며 시대부 노인에게는 솜과 비단을 더 준다”, 그리고 임금이 시학할 때에는 공자묘에 참배하는 의식이 있는데 절차는 지금 알성시의 의식과 같다고 하였다(유형원 1991).

조선시대 양로연은 『경국대전』 연향조에 “매년 계추에 양로연을 행한다. 대소 원인(大小員人)의 나이가 80세 이상인 자가 잔치에 참석한다. 부인들에게는 왕비가 내전에서 잔치를 베풀다. 지방에서는 수령이 내외청을 따로 자리를 마련하여 잔치를 행한다.”고 하였고(한우근 1986), 『기로지(耆老志)』(기로지 권9)와 『목민심서(牧民心書)』(목민심서 권3)에 국로(國老)와 서인(庶人)기로에 대한 것으로 대별하고 있다. 매년 중추에 예조가 길일을 택하여 양로연의 설행 날짜를 뽑아 올리고 이를 80세 이상의 노인에게 먼저 알리도록 하였다(세종실록 권55). 지방에서도 주부군현의 양로연의에 의하여 소재 관리가 길일을 택하여 경내 노인 80세 이상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였다(세종실록 권55). 이 양로연은 원래 사대부층 연장자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개최된 것이었으나, 세종 대에 이르러 서인 남녀 연장자들까지 참가할 수 있도록 확대 실시되었다(세종실록 권 57). 세종17년(1435)에는 100세 이상자에게 매년 연초에 쌀과 술과 고기(酒肉)를 내렸을 뿐 아니라 80세 이상자에게도 중장에서와 같이 주군의 지방에까지 사연(賜宴)하는 것을 법률로 제정하였다(증보문헌비고 권83).

기로에 대한 연회는 기로소와 군왕과 국로가 함께 하는 군신상회연(君臣相會宴)과 국로들만의 회연으로 열리는 기로연·기영회 등으로 나뉘는데, 일반 서로에게 실시한 양로연은 국로를 대상으로 한 연회와는 달리 경로행사로서의 의미가 강했다(박상환 2000). 세종 대에는 중추로 연회를 베풀고 주군(州郡)의 지방 기로들을 수령이 봉향(奉餉)하도록 법률로 제정하여 양로연을 강화하였다(증보문헌비고 권83).

2. 조선시대 실행된 양로연

조선 전기에 양로연은 스승 공경의 의례로 세종대에 처음 시행되었다. 따라서 의식절차나 시위 등을 세종대 당제를 참작하여 송제에 가깝도록 만든 정지희의의 회례연과 비슷하

지만 임금이 노인들이 들어올 때 일어나서 맞이한다든지 천인까지 참여한다든지 하는 점들은 세종대 주자성리학에 입각한 이상사회를 건설하려는 의지를 잘 반영하고 있는 의례였다.

조선시대에 『조선왕조실록』, 『기사지』, 『증보문헌비고』 등의 기록에 나온 양로연은 표 2와 같이 약 80회 개최되었다. 조선시대 전기인 세종대에 거의 매년 행해졌고, 문종과 단종대로 이어지면서 계속되었다. 그러나 세조 대에는 공신이 올리는 풍정이 자주 베풀어지면서 양로연은 가끔 베풀어졌다. 그러다가 성종 대에는 사림들이 등장하면서 다시 양로연의가 매년 베풀어지고 스승 공경의 의의를 살려 임금이 문묘제석전 참배를 한 후에 성균관에서 양로연이 베풀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연산군 대는 양로연은 향락적인 진연이 자주 베풀어졌다. 중종 반전이 일어나 사람들이 등장하자 매년 양로연이 베풀어지기 시작하고 성종 대처럼 성균관에서도 양로연이 베풀어진다. 이는 명종 대까지 이어진다. 개최 시기는 대부분 중추기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 전기인 세종에서 중종 조는 궁중의 양로연이 비교적 활발하게 개최되었고, 재위 왕별로 살펴보면 세종은 재위 31년간 중에 12회, 세조는 13년간 재위 중에 18회, 성종은 25년 재위기간 중에 21회, 연산군은 12년 재위 기간 중에 7회, 중종은 23년간 재위 기간 중에 12회 개최였다. 이처럼 양로연이 세조와 성종 조에 가장 많이 개최되었는데 이는 세조와 성종 대에 기로정책이 왕권강화책과 맥을 같이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숙종은 2회, 경종은 1회, 영조는 3회, 정조는 3회, 순조는 1회, 고종은 1회 개최되었다. 선조에서 인조 대에 걸쳐서는 양로연이 실행된 기록이 거의 없는데 이는 왜란과 호란으로 인한 정치 사회적 혼란 때문으로 추측된다(박상환 2000).

조선조 후기에는 조선 전기에 매년 행해지던 풍정(豐呈)·진연(進宴)·회례연(會禮宴) 같은 잔치가 거의 행해지지 않고 회갑연 같은 특별한 날에만 행해지는 가운데 노인들에게 음식이나 물건을 하사하고, 양로연 잔치가 궁중에서는 가뭄이나 재해 등의 이유로 행해지지 않았지만 지방에서 양로연 잔치를 개최하거나 실질적으로 노인들을 구휼하는 정책이 행하여졌다.

영조는 세종대 양로연의 뜻을 살려 정조 19년(1795) 진연에 양로연이 포함되어있는데 이 해는 행사는 정조가 화성에 생부인 사도세자 능을 참배하러 가서 낙남현에서 양로연을 베풀었다.

3. 조선시대 양로연 의례절차

표 2. 조선시대 양로연 개최 기록

재위왕	개최연월일	장소	연회명	참석자	비고
12회 세종	14년(1432) 8월	근정전, 사정전	양로연 중궁양로연	-	2품이상 殿內, 4품이상 月臺, 5품이하 서로 殿庭.
	15년(1433) 윤8월 3일 계축	근정전,	양로연	155인	노인에게 절하지 말라 명함.
	15년(1433) 윤8월 6일 병진	사정전	중궁양로연	362인	
	16년(1434) 8월22일 병인	사정전	양로연	-	
	16년(1434) 8월25일 기사	사정전	중궁양로연	-	
	17년(1435) 9월 6일 갑술	근정전	양로연	169인	
	17년(1435) 9월11일 기묘	사정전	중궁양로연	350인	18년 한재로 양로연 정지
	22년(1440) 9월 6일 을사	근정전	양로연	83인	8월 합길도 양로연
	22년(1440) 9월12일 신해	사정전	중궁양로연	231인	
	23년(1441) 9월24일 정사	근정전	양로연	81인	
18회 세조	23년(1441) 9월27일 경신	사정전	중궁양로연	215인	
	24년(1442) 8월25일 임자	근정전	양로연	80인	
	24년(1442) 8월27일 갑인	사정전?	중궁양로연	-	25, 26년 한재로 양로연 정지. 27년 흥작으로 양로연 정지.
	30년(1448) 8월25일 무인	계조당	양로연	-	세자가 대행
	1년(1456) 7월	소재관청 대명전	양로연 양로연	- 288인	70세 이상 노인 기로 賜宴
	2년(1456) 10월 1일 정유	대명전 개성부 근정전	양로연	300인	봉연기로 재추노인 등 가자(加資)
	2년(1456) 10월17일 계축	근정전	양로연	-	
	4년(1458) 9월15일 기해	경회루	양로연	-	
	4년(1458) 9월18일 임인	사정전	중궁양로연	-	
	5년(1459) 9월11일 경인	인정전	양로연	-	왕세자 내종친 옥조판서이상 승지입시 봉연 노인 가자
21건 성종	5년(1459) 9월19일 무술 10월	사정전 부벽루	중궁양로연 지방양로연	- 100여인	왕세자 내종친 옥조판서이상 승지입시 봉연 노인 가자
	6년(1460) 10월18일 경신	대동관	지방양로연	130여인	남녀노인 대동강
	6년(1460) 10월26일 무진	-황주	지방양로연	-	노인 男婦 대전, 중궁, 왕세자 참석
	6년(1460) 11월02일 갑술	-파주	지방양로연	-	
	7년(1461) 9월15일 임자	근정전	양로연	-	
	7년(1461) 9월18일 을묘	사정전	중궁양로연	-	
	8년(1462) 9월11일 임인	근정전	양로연	-	
	8년(1462) 9월15일 병오	사정전	중궁양로연	-	
	9년(1463) 9월 8일 갑자	근정전	양로연	-	왕세자 종친 재추 승지입시
	9년(1463) 9월11일 정묘	사정전	중궁양로연	-	왕세자 대군 군, 정승, 판서 등 제신입시 봉연 노인가자 10년2월 중국황제 망으로 양로연 정지
	10년(1464) 9월 3일 계축	근정전	양로연	-	10년2월 중국황제 망으로 양로연 정지
	10년(1464) 9월 7일 정사	사정전	중궁양로연	-	왜인50여인 참석
21건 21건	11년(1465) 8월10일 을유	근정전	양로연	-	
	12년(1466) 9월	근정전	양로연	-	왕세자 제대군, 정승, 판서 재추 등판윤 등 입시 가자
	2년(1471) 9월12일 신사	인정전	양로연	-	
	2년(1471) 9월14일 계미	선정전	중궁양로연	154인	미봉자 주찬 내림.
	4년(1473) 9월14일 임인	인정전	양로연	-	
	4년(1473) 9월21일 기유	선정전	중궁양로연	-	
	5년(1474) 9월 4일 병진	인정전	양로연	-	연희 파한 후 노인에게 어육을 사함. 9월 개성부 양로연
	6년(1475) 9월 6일 임자	인정전	양로연	-	참연 노인 가자
	7년(1476) 9월12일 임자	인정전	양로연	122인	
	8년(1477) 9월18일 임오	인정전	양로연	-	
10년(1479)	8년(1477) 9월24일 무자	선정전	중궁양로연	-	
	9년(1478) 4월 3일 갑오	명륜당	국학양로연	280여인	유생 甚多, 문묘작현례 후
	9년(1478) 9월17일 경오	인정전	양로연	-	

표 2. 조선시대 양로연 개최 기록 (계속)

재위왕	개최연월일	장소	연회명	참석자	비고
	17년(1486) 9월21일 계해	선정전	중궁양로연	-	참연 노인 가가
	11년(1480) 9월19일 병신	인정전	양로연	-	12년 흥년 양로연 정지. 酒肉 반사함. 16년 제관찰사에 양로지전을 유시함.
	18년(1487) 9월21일 정사	인정전	양로연	-	
	20년(1489) 9월20일 을해	선정전	중궁양로연	-	20년 9월14일 비로 양로연 정지. 주육 나눠줌.
	21년(1490) 9월17일 병인	인정전	양로연	-	
	21년(1490) 9월21일 경오	선정전	중궁양로연	-	
	22년(1491) 9월21일 갑오	선정전	중궁양로연	-	22년 9월14일 비로 양로연 정지
	23년(1492) 9월13일 신사	인정전	양로연	-	
	24년(1493) 9월28일 기미	인정전	양로연	-	
	24년(1493) 9월30일 신유	선정전	중궁양로연	-	
	25년(1494) 9월29일 갑인	인정전	동궁양로연	-	세자가 대행
	25년(1494) 10월 4일 기미	선정전	중궁양로연	-	
연산군	3년(1497) 2월24일 병신	인정전	양로연	82인	
	3년(1497) 2월27일 기해	선정전	중궁양로연	160여인	
(7회)	4년(1498) 10월23일 을유	인정전	양로연	-	내외연
	4년(1498) 10월25일 정해	선정전	중궁양로연	-	
	6년(1500) 9월13일 갑자	인정전	양로연	-	
	6년(1500) 9월15일 병인	선정전	중궁양로연	-	
	7년(1501) 9월20일 을미	인정전	양로연	-	
	9년(1503) 9월13일 병자	사정전	중궁양로연	-	賜物
	11년(1505) 9월 5일 병술	인정전	양로연	-	
중종	2년(1507) 9월12일 임자	근정전	양로연	-	
	5년(1510) 10월 6일 기축	사정전	중궁양로연	-	참연자 賜衣資
(12회)	7년(1512) 10월 7일 정미	사정정	중궁양로연	-	
	8년(1513) 9월 4일 기사	근정전	양로연 친행	-	10,11,12년 한재로 양로연 정지.
	11년(1516) 9월	인정전	-	-	0세 이상 노인친하으 영의정 侍宴
	16년(1521) 9월16일 갑자	근정전	양로연	-	입참노인 양인174인 가자, 쳐인14인 賜物 17년9월 慈殿 병환으로 정지
	16년(1521) 9월19일 병인	사정전	중궁양로연	-	18년9월 천재로 정지 20년8월 避殿으로 정지
	23년(1528) 10월16일 갑인	애련정 여주	지방양로연	-	참연 노인가자 사물, 삼읍(여주·용인·이천)노인입참
	23년(1528) 10월17일 을묘	양벽정 이천	지방양로연	-	
	28년(1533) 10월 7일 병자	근정전	양로연	-	
	38년(1543) 9월 5일 병오	명정전	양로연	-	29년7월 태평관 양로연 30년8월 개성부, 풍덕 양로연 30년9월 경덕궁 양로연 32년8월 양로연 정지
숙종	17년	-	양로연	-	시종신에 賜宴
	32년(1706) 9월	경복궁	양로연	수백인	참연자 159인 가자. 서인 이상 수백인 賜酒宴
경종	? 3년(1723)	-	-	150인	조신70인, 士庶 80인
영조	42년(1766) 1월	통구	양로연	-	서민연
	42년(1766) 3월	금남문	양로연	-	서민 기로연
	49년(1773) 윤3월 3일 임술	금남문	양로연	수백인	
정조	19년(1795) 윤2월14일 병신	화성행궁	지방양로연	374인	낙남현, 영의정 등 15인 입시
	19년(1795) 4월 6일 병술	영홍행궁	지방양로연	174인	영홍노인 (조관, 사서 164인)월 3일宴
	19년(1795) 5월 5일 을묘	풍파루	지방양로연	-	합홍
순조	14년(1814)	제주	80여인	-	
고종	30년(1893) 2월	근정전 근정전 내전	양로연	-	郡老特許扶杖, 기로부녀 招入殿庭 宣醞

1) 양로연의주 (養老宴儀注)

양로연 의주는 『세종실록』(권55 14년 정월 정묘)와 『세종실록』오례의(권57 14년 8월 정미), 『국조오례의』등에 주최하는 인물에 따라 「대전 양로연 의주」, 「중궁 양로연 의주」, 「동궁 양로연 의주」(세종실록 권121 30년 8월 병자) 등과 지방 양로연의 기록인 「개성부급제주부군현 양로(연)의」 등의 기록이 남아 있다. 의주에는 개최시기가 모두 중추(仲秋)로 기록되어 있다. 그중 세종 14년에 권55에 조의 대전(大殿) 양로연 의주절차는 표 3.과 같이 정리할 수 있고, 한 편 같은 세종대인데 『세종실록』오례의에 나와 있는 의주는 표 4.와 같은데 표 3에 비하여 절차가 더욱 정중하고 복잡하다.

4. 양로연의 하사음식

1) 양로연 상차림

양로연 행사 때는 인군(人君)의 기로에 대한 배려가 여러 면에서 적극적으로 보여 주었다. 『목민심서』에는 '연상(宴床)을 차릴 때 80세 이상이면 그 찬은 네 접시로 하고, 90세 이상이면 여섯 접시로 하였다.'(정약용 원저 1998)고 하였는데, 『예기』 「향음주의(鄉飲酒義)」에 "60세는 세 접시, 70세는 네 접시, 80세는 다섯 접시, 90세는 여섯 접시이다." 하였는데, 이제 이와 같이 잔추린 것이다. 이는 연세가 많은 노인들을 더 정중하게 많은 음식을 배려하는 뜻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쇠약하고 병들어 올 수 없는 이에게는 그 집으로 찬을 보내주었다. 만약 1백세된 이가 있으면, 수령은 이날 여덟 접시의 찬을 수향(首鄉)을 보내 봄소 그 집에 가서 바치도록 한다. 비록 흉년일지라도 궁촌(窮村) 노인에 대하여는 연악(宴樂)을 허락하고 상경이 어려운 기로에 대해서는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혜홀(惠恤)토록 하였다(박상환 2000).

2) 양로음식 하사

양로연이 열리지 않을 때에도 노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기도 하였다. 겨울철에 노인들에 옛을 나누어 주고, 세찬을 내렸다.

"계피와 생강 등을 넣은 옛을 만들어 유지에 싸두었다가 동짓날 관청에서 나누어 주면 백성들이 진심으로 기뻐하였다. 옛 만드는 법은 '먼저 검을 옛 30여근을 만들고 거기다가 계피·건강(乾薑)·진피(陳皮)·반하(半夏)·과루인(瓜蔞仁)·천초(川椒)·오매(烏梅)·칠엽(漆葉) 각 2냥과 호초(胡椒)·남성(南星) 각 1냥을 갈아서 골고루 섞고, 옛이 식기를 기다려서 옛에 봄은 콩가루를 입친다. 이 옛은 담을 삭게하고 기침을 멎게 하며, 횟배를 가라앉히고 기운을 내려가게 하니 노

인들에게는 겨울에 매우 좋은 것이다(정약용 원저 1998).

노인들의 설날 세찬을 염려하여 음식물을 내리기도 하였다. 설날 그믐 이틀 전에 남자로서 80세 이상 된 노인에게는 쌀 1말과 고기 2근씩의 예물을 각주어서 안부를 물고-여자는 감등해도 무방하다. 90세 이상된 노인에게는 귀한 반찬 2접시를 더 보탠다(정약용 원저 1998).

3) 낙남헌(落南軒)양로연 찬품

정조 19년(1795) 낙남헌에서 열린 양로연에는 정조가 영의정 등 종신 15명과 374명의 노인이 참석하였다. 당시 정조의 연세는 68세로 참석한 노인들과 비슷한 또래로 노인들에 대한 예후를 본인과 똑같이 하고 있다.

『원행을묘 정리의궤(園行乙卯整理儀軌)』(권4) 찬품조에 나오는 양로연상은 임금이나 서인이나 똑같이 4그릇이다. 단지 대전께는 붉은 칠(朱漆) 운족반(雲足盤)에 자기(磁器)에 담아 올리고, 노인상 425상은 싸리나무반에 자기 그릇에 음식을 담았다. 상에 올린 음식은 두부탕(豆泡蕩), 편육(片肉), 흑태찜(黑太蒸), 실과(實果)의 4가지이나 음식에 실제로 쓰여진 재료, 분량, 조리법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첫째 음식인 두부탕(豆泡蕩)으로 두부를 넣고 끓인 국이고, 둘째 음식은 편육(片肉)으로 고기의 종류는 알 수 없으나 덩어리 고기를 오래 무르도록 삶아 얇게 썰은 것이고, 셋째 음식은 흑태찜(黑太蒸)으로 검정콩을 무르게 조린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넷째는 실과로 배, 전시, 밤을 한 그릇에 담았다. 이상의 3가지 음식들은 모두 부드럽게 익혀서 연세가 든 노인들이 먹기에 적합하게 하고, 영양적으로 두부·고기·콩 모두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III. 결 론

양로연은 중국 고대로부터 유래되며 조선시대 양로연은 왕 이하 고관들이 참석하는 대대적인 거국적 행사로서 그 비중이 매우 커졌다. 양로연의 역사는 중국 고대에서 유래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에 유교가 전래된 이래 양로정책이 구체적으로 시행되었다가 보다는 진휼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삼국 중 신라, 고구려, 백제에서는 왕이 임재한 양로연이 자주 베풀어졌다. 때로는 왕이 지방을 순행할 때 노인과 스스로의 살아갈 수 없는 자(自存不能者)를 위문하고 곡물과 포백(布帛)을 하사하였다. 통일신라시대에 양로사례로서 주식(酒食)이나 곡물, 포백 등을 하사한 기록이 있다.

삼국시대에 왕족 중심의 귀족 국가체제가 확립되면서 국가적인 사전(祀典)이 갖추어졌다. 그리하여 양로연 의례가 궁

표 3. 「양로연의주」의 의례 절차

일자	내용	인물	의례 행위
음력 8월 (택일)	길일택일 궁내외선포	예조	80세 이상 노인에게 알린다.
연회준비 (1일전)	근정전 연회장설치	掖庭署 雅樂署 忠扈衛	유사가 전하의 자리[座]를 근정전의 북쪽 벽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향로 두 개를 앞 기둥[前楹] 밖에 좌우로 설치한다. 전악(典樂)이 전정(殿庭)에 헌현(軒懸)을 벌여 놓고, 전상의 서계의 서쪽에 거휘위(舉麾位)를 설치하되, 모두 보통 때의 의식대로 한다.
老人位 拜禮位 연회준비 (당일)	典儀		전의가 여러 노인들 중에서 2품 이상인 자의 자리를 전내의 동·서에 설치하되, 겹줄로 하여 서로 마주보게 하고 북쪽이 위가 되게 하다. 4품 이상의 자리는 전의 계상에 동·서에 설치하고, 5품 이하의 자리는 계하에 설치하되, 모두 겹줄로 하여 서로 마주보게 하고 북쪽이 위가 되게 한다. 서인은 전정의 동·서에 자리를 정하되, 겹줄로 하여 서로 마주보게 하고 북쪽이 위가 되게 한다. 판통례 및 전상의 전의의 자리는 전상의 동계의 동쪽에 설치하되 서향으로 한다. 계하의 전의의 자리는 악현의 동북쪽에 설치하고, 통찬 1인의 자리는 남쪽에 있게 하되, 조금 뒤로 물려서 모두 서향하게 한다. 통찬 1인의 자리는 악현의 서북쪽에 있게 하되 동향하게 하고, 또 여러 노인들 중에 1품 이하의 배위는 전정의 동·서에 설치하되, 매 관동마다 자리를 달리 하여 겹줄로 북향하게 하고, 상대하여 우두머리가 되게 한다. 서인의 자리는 조금 뒤로 설치한다.
막차 설치 酒亭 酒卓	奉禮郎 司尊提調 司尊提調		봉례랑이 여러 노인들의 막차를 홍례문 안에 설치하고, 다방 제조가 전상에 남쪽으로 가까이 준을 설치하되 북향하게 하고, 점을 설치하고 작을 옮겨놓는다. 유사가 전에 오른 자를 위한 준(尊)을 전의 계상의 동·서에 북쪽으로 가까이 설치하며, 전에 오르지 않는 자를 위한 준을 각각 그들의 자리 앞에 설치한다.
군사배열	병조/군사		병조에서 제위(諸衛)를 정돈하고, 의장을 베풀어 문과 전정에 벌여 서게 한다.(정월과 동지의 회례의식과 같이 한다.) 군사들은 군복을 갖춘다.
참석자 복장과 배위	참석자		여러 노인들은 각각 자기의 <신분에 의거한> 옷차림을 하고 【품관은 사모와 품대(品帶), 서인은 시복(時服).】 시작에 맞추어 막차 나아간다.
연회진행 (당일)	호위관원 判通禮 協律郎 전하입장		시각에 따라 모두 문밖의 막차에 나아간다. 통례문이 중엄을 아뢰어 청한다. 전하가 사정전에 나와 않으면, 유사가 산선의 시위를 베풀기를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근신과 집사관이 먼저 사배례를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행한다. 전악이 악공들을 거느리고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고, 협률랑이 들어와 거휘위에 나아간다. 여러 시위관은 각기 기구와 복색을 갖춘다. 상서관이 옥새를 받들고 함께 합문에 나아가 봉영한다. 전의가 통찬을 거느리고 먼저 들어가 자리에 나아간다. 판통례가 의판을 아뢰면, 중금이 전엄(傳嚴)한다. 전하가 장차 나가려 하여 의장이 움직이면, 협률랑이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휘를 들고 일어난다. 악공이 축(축)을 치고, 헌가(軒架)가 응안지악(隆安之樂)을 연주한다.
노연 노인배례	전하 尙瑞官 협률랑 봉례랑 노인 전의 통찬		전하가 자리에 오르면 향로에서 연기가 오른다. 상서관이 옥새를 받들어 <전하의> 자리 앞에 놓기를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협률랑이 휘를 드리면, 어를 쳐서 풍악을 그친다. 판통례와 전의가 전의 계상에 올라 서향해 선다. 봉례랑이 여러 노인들을 나누어 인도하여, 【어떤 이는 지팡이를 짚고, 어떤 이는 옆에서 불든다.】 차례로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 선다. 전의가 ‘사배하라’ 한다. 【임시하여 전하의 명령이 있으면 절은 한 번 하고 앉았다가 다시 한다.】 통찬이 이를 전하여 찬하면, 여러 노인들은 지팡이를 놓고 몸을 굽히고, 서안지악을 연주한다.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하면 풍악이 그친다.
노인퇴장	판통례 대언 봉례랑		판통례가 전하의 자리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끊어앉아, 여러 노인들을 맞아 전에 오르게 하기를 계청하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물러나와 제자리에 돌아간다. 대언이 앞으로 나아가 교지를 받고 물러나와 섬돌에 이르러 서향하여 서서 교지를 선포하기를, ‘여러 노인들을 맞아 전에 오르게 하라.’하고, 대언이 시위로 돌아온다. 봉례랑이 여러 노인들 중에서 마땅히 전상의 오를 자를 나누어 인도하여 【지팡이를 짚거나, 혹은 옆에서 불들기를 처음과 같이 한다.】 서계로 올라 자리에 나아간다. 【계하와 전정에 자리할 자도 또한 인도해 자리에 나아간다.】

표 3. 「양로연의주」의 의례 절차 (계속)

進饌의례 (進花의례) 賜宴	전악 사용제조 전하 집사관 노인	전악이 가(歌)와 금(琴)·슬(瑟)을 인도하여 올라가 자리에 나아간다. 사용 제조가 식사(食事)를 올리고, 풍악을 연주한다. 집사관이 여러 노인들의 식사를 베풀어 놓고, 먹기를 마치면 풍악을 그친다. 【무릇 식전악이 가와 금·슬을 인도하여 올라가 자리에 나아간다. 사용 제조가 상[案]을 올리고 풍악을 연주한다. 근시가 꽃을 올리고 나면, 풍악을 그친다. 집사관이 여러 노인들의 탁자를 배설하고, 다방 제조가 첫 번째 작에 술을 따르고, 풍악을 연주한다. 전하의 자리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끊어 앉아서 이를 좌전에 놓는다. 집사관이 여러 노인들에게 술을 들린다.】
進酌의례 賜宴	다방제조 전하 집사관 노인	다 들고나면 다방 제조가 앞으로 나아가 빙 작을 받아 가지고 준소(尊所)로 돌아온다. 풍악을 그친다. 【무릇 작을 올릴 때에는 풍악을 연주하고, 들기를 마치면 풍악을 그친다.】 사를 올리면 풍악을 연주하고, 식사를 마치면 풍악을 그친다. 다음은 술을 올린다. 【다방 제조가 술을 올릴 때마다 집사관이 여러 노인들에게 술을 들린다.】 다음 식사를 올린다. 【다방 제조가 식사를 올릴 때마다 집사관이 여러 노인들에게 식사를 베푼다.】
進徹案	사용제조 집사관	술잔이 다섯 순배를 들고 난 뒤에 사용 제조가 앞으로 나아가 상을 치우고, 집사관이 여러 노인들의 탁자를 걷는다.
배례	노인 봉례랑 전의 통찬	봉례랑이 상하의 여러 노인들을 나누어 인도하여 모두 배위로 돌아가 선다. 전의가 '사배하라.' 한다. 【전하의 명령이 있으면 절은 한 번 하고 앉았다가 다시 한다.】 통찬이 이를 전찬(傳贊)하면, 몸을 굽히고 서안지악을 연주한다.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하면, 풍악을 그친다. 봉례랑이 여러 노인들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나간다.
연회종료 예고	판통례 협률랑	판통례가 앞으로 나아가 전하의 자리 앞에 끊어 앉아서 '예가 끝났다.'고 아뢰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제자리로 돌아온다. 협률랑이 엎드려 휘를 들고 일어나면 현가가 응안지악을 연주한다.
전하환궁	전하 侍衛	전하가 자리에서 내려 여(輿)를 타고 대내(大內)로 돌아가고, 산선의 시위는 올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시신이 수종하여 합문까지 이르면 풍악을 그친다.
의일	사은	이튿날 여러 노인들이 대궐에 나아가 사은(謝恩)한다." 하였다.

표 4. 「오례」의 양로의 의례 절차

내 용	담당/인물	의례행위
택일	예조	중추월에 예조에서 길일을 골라서 내외관(內外官)에게 선섭(宣攝)하여, 각각 그직책을 다하게 한다. 먼저 여러 노인의 나이 80세 이상 되는 사람에게 알린다.
전날 연회장설치	掖庭署 雅樂署令 協律郎 忠扈衛	액정서에서 어좌(御座)를 근정전의 북벽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향안(香案) 2개를 전 밖의 왼쪽과 오른쪽에 설치한다. 아악서령이 헌현(軒懸)을 전정(殿庭)에 남쪽 가까이 북향하여 진열하고, 등가(登歌)를 전계(殿階) 위에 설치하고, 협률랑의 거휘위(舉麾位) 2개를 설치하되, 1개는 전밖에 설치하고, 1개는 서계(西階) 위에 설치하며, 아악령(雅樂令)의 자리를 중계(中階)에 설치하되, 모두 서쪽 가까이 동향하게 한다. 총호위에서 여러 노인의 위치(位次)를 홍례문(弘禮門) 밖의 동쪽과 서쪽에 설치한다.
老人位설치 拜禮位설치	典儀 通贊 奉禮郎	그날에 전의가 여러 노인의 2품 이상의 자리를 전내의 동쪽·서쪽에 설치하되, 모두 겹줄로 하여 서로 마주보고, 북쪽을 상(上)으로 하며, 4품 이상의 자리를 전계(殿階) 위의 동쪽·서쪽에 설치하고, 6품 이상의 자리를 남쪽 중계(中階)의 동쪽·서쪽에 설치하고, 7품 이하의 자리를 계하(階下)의 동쪽·서쪽에 설치하되, 모두 매 품마다 자리를 달리 하여 겹줄로 서로 마주보고, 북쪽을 상(上)으로 하며, 서인(庶人)의 자리를 전정(殿庭)의 동쪽·서쪽에 설치하되, 겹줄로 하여 서로 마주보고, 북쪽을 상으로 한다. 여러 노인의 1품 이하의 배례하는 자리를 전정의 동쪽·서쪽에 설치하되, 모두 매 품마다 자리를 달리 하여 겹줄로 북향하고 서로 마주 대하여 머리로 하며, 서인의 배례하는 자리는 조금 뒤에 있고, 계상의 전의 자리는 동계 위에 동쪽 가까이 서향하고, 판통례와 계하의 전의 자리는 동계 아래에 동쪽 가까이 서향하고, 통찬과 봉례랑은 남쪽에 있어 조금 뒤로 물리게 한다. 또 통찬과 봉례랑의 자리를 서계 아래에 서쪽 가까이 동향하게 하되, 모두 북쪽을 상(上)으로 한다.

표 4. 「오례」의 양로의 의례 절차 (계속)

酒亭설치 酒卓설치	司尊提調 司尊別監	사준 제조가 주정(酒亭)을 전내에 남쪽 가까이 북향하여 설치하되, 점을 설치하고, 작(爵)을 가(加)하며, 사준 별감이 전에 오른 사람의 주탁(酒卓)을 전 밖의 동쪽·서쪽에 북쪽 가까이 설치하고, 전계 위와 전정에 있는 사람의 주탁을 매 품계의 앞에 설치한다.
군사배열 참석자복장	병조	병조에서 여러 위(衛)의 군사를 거느리고 노부 반장(齒簿半仗)을 정계(正階)와 전정의 동쪽·서쪽과 균정문(勤政門)의 안팎에 진열하고, 군사를 전계 위와 중계(中階)·전정의 동쪽·서쪽과 안팎의 문에 배열(排列)하기를 모두 정월·동지의 회례하는 의식과 같이 한다. 【무릇 군사들은 모두 무기와 제복을 갖춘다.】 여러 노인들은 상복(常服) 차림으로 【관직이 있는 사람은 사모(紗帽)와 품대(品帶)를 착용하고, 서인(庶人)은 상복을 입는다.】
호위준비	호위관원 司禁	그 시각에 모두 막차(幕次)에 나아가고, 여러 호위하는 관원과 【도진무(都鎮撫) 1인, 내금위 절제사(內禁節制使) 2인, 충의위(忠義)·충순위(忠順)·별시위(別侍)의 절제사(節制使) 각각 1인, 운검(雲劍)을 찬 중추(中樞) 4인, 갑(甲)을 받든 상호군(上護軍)·주(胄)를 받든 상호군 각각 1인, 궁시(弓矢)를 받든 상호군·운검(雲劍)을 받든 대호군(大護軍)·책(策)을 가진 대호군 각각 2인, 궁시를 가진 호군(護軍)·몸을 방비하는 호군 각각 8인, 사복관(司僕官) 6인이다.】 사금은 각각 무기와 제복을 갖추고 사정전의 합문 밖에 나아가서 사후(伺候)한다.
임금 및 참석자입장	판통례 殿下 繖扇侍衛 近侍 執事官 四拜 典樂署 典樂拜位 협률랑 봉례랑	판통례가 합문 밖에 나아가서 부복하고 끓어앉아 중엄을 계청하면, 전하가 익선관을 쓰고, 곤룡포를 입고 자리에 나아가는데, 산(纖)과 선(扇)으로 시위하기를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 한다. 근시와 집사관이 【근시는 승지(承旨)와 사관(史官)과 같은 등류이고, 집사관은 판통례·전의·통찬·봉례랑과 같은 등류이다.】 먼저 네 번 절하는 예를 행하기를 평상시와 같이 한다. 전악이 공인(工人)과 이무(二舞)를 거느리고 들어와서 자리[位]에 나아가고, 【전악서(祭樂序)의 전악이 또한 잡대(雜隊)를 거느리고 들어와서 문무(文舞)·무무(武舞)의 남쪽에 선다.】 협률랑이 들어와서 거휘위에 나아간다. 집사관이 먼저 자리에 나아가고, 봉례랑이 여러 노인의 3품 이하의 사람을 나누어 인도하여 【혹은 지팡이[杖]를 짚기도 하고, 혹은 좌우(左右)에서 부축하기도 한다.】 동편문과 서편문을 지나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전하입장 의장이동 노연 산선시위 부복평신	판통례 협률랑 (承旨)	판통례가 부복하고 끓어앉아 외판(外辦)을 아뢰면, 전하가 여(輿)를 타고 나오는데, 산과 선으로 시위하기를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 한다. 전하가 나가려 하여 의장(儀仗)이 움직이면, 협률랑이 끓어앉아 부복하였다가 휘를 들고 일어나고, 공인(工人)이 축(足)을 두드리어, 현가에서 음안지악(隆安之樂)이 시작된다. 전하가 자리에 오르면, 향로의 연기가 피어 오르는데, 산과 선으로 시위하기를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 한다. 협률랑이 끓어앉아 휘를 가로 눕히고는 부복하였다가 일어나고, 공인이 어(敵)를 긁어서, 음악이 그친다. 승지가 들어와서 어좌의 좌우에 나아가서 부복하고, 사관(史官)은 그 뒤에 있다.
노인배례	판통례 典儀 통찬 봉례랑 노인 전의 통찬	판통례·전의·통찬이 올라가서 동계 위의 동쪽 가까이로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고, 봉례랑이 여러 노인의 2품 이상의 사람을 나누어 인도하여 【혹은 지팡이[杖]를 짚기도 하고, 혹은 좌우에서 부축하기도 한다.】 서편문을 지나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전의가 “배(拜)하라.”고 말하고, 통찬이 “국궁(鞠躬), 배(拜), 재지(再至), 흥(興), 평신(平身)하라.”고 창(唱)하여, 【무릇 통찬이 친(贊)하고 창(唱)할 적에는 모두 전의의 말을 받아서 한다.】 여러 노인들이 지팡이를 벼리고 국궁하면, 현가에서 서안지악(舒安之樂)이 시작되고, 절하고 한번 앉았다가, 두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그전대로 펴면, 【만약 교지가 있어 제례(除禮)하게 한다면 절하지 않는다. 뒤에도 이와 같다.】 음악이 그친다. 봉례랑이 여러 노인들 중에서 전에 오를 만한 사람을 나누어 인도하여 【그대로 지팡이를 짚고 좌우에서 부축하기를 처음과 같이 한다.】 동편계와 서편계를 지나 전(殿)에 들어오려고 하면, 판통례가 서문을 지나 어좌 앞으로 나아가서 부복하고 끓어앉아 여러 노인들을 위하여 일어나기를 계청하여, 전하가 일어난다. 판통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내려와서 그전 자리로 돌아간다. 전하가 여러 노인들에게 명하여 자리에 나아가게 하면, 여러 노인들이 끓어앉아 부복한다. 전하가 앉으면, 여러 노인들이 일어나서 자리에 나아간다. 【전에 오르지 못한 사람에게도 또한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가게 한다.】

표 4. 「오례」의 양로의 의례 절차 (계속)

進饌 노인찬탁설치 進花	典樂 司饔提調 대전 執事官 노인	전악이 가자(歌者)와 금슬(琴瑟)을 인도하여 동편계와 서편계를 지나 올라와 자리에 나아가게 하고, 사옹 제조가 찬안(饌案)을 올리면, 【찬안을 올릴 적에는 어좌(御座) 앞의 남계(南階)를 거쳐 올리고, 찬안을 걷어치울 적에는 동계(東階)를 지나 걷어치운다.】 현가에서 휴안지악(休案之樂)이 시작되고, 집사관이 여러 노인들의 찬탁(饌卓)을 설치하면, 【전에 오르지 못한 사람에게는 집사자가 이를 마련한다. 뒤에도 이와 같다.】 음악이 그친다. 근시(近侍)가 꽃[花]를 올리면, 휴안지악이 시작되고, 집사관이 여러 노인들에게 꽃을 흘려 뿌리면, 음악이 그친다.
進湯 賜宴 徹案	司饔提調 司尊提調전하 집사관 노인	사옹 제조가 탕(湯)을 올리면, 【무릇 탕을 올릴 적에는 남계를 거쳐 올리고, 물릴 적에는 동계를 거쳐 물린다.】 현가에서 수보록지악(受寶之樂)이 시작되고, 집사관이 여러 노인들에게 탕을 설비하여, 이를 먹기를 마치면, 음악이 그친다. 【사옹 제조가 탕(湯)을 올릴 적마다 집사관이 여러 노인들에게 탕을 설치한다.】 사준 제조가 제1작(爵)에 술을 따르면, 등가(登歌)에서 문명지곡(文明之曲)이 시작되고, 문무(文舞)가 들어와서 시작된다. 사준 제조가 작을 받들어 끓어앉아서 올리면, 【무릇 작을 올리고 작을 물리칠 적에는 모두 남계를 지나서 한다.】 내시가 전해 받들어 안(案)에 두고, 집사관이 여러 노인들에게 술을 들려서 마시게 한다. 이를 마치면, 사준 제조가 앞으로 나아가서 빈 작을 받아 점에 도로 둔다. 문무(文舞)가 여섯 번 변(變)하고 그치면 나간다. 【사준 제조가 작을 올릴 적마다 집사관이 여러 노인들에게 술을 들린다.】 탕(湯)을 올리면, 현가에서 근천정지악(觀天庭之樂)이 시작된다. 제2작을 올리면, 현가에서 무열지악(武烈之樂)이 시작되고, 무무(武舞)가 들어와서 시작하여 여섯 번 변(變)하고 그치면 나간다. 탕(湯)을 올리면, 현가에서 수명명지악(受明命之樂)이 시작된다. 작(爵)을 올리고 탕(湯)을 올리기 를 모두 앞의 의식과 같이 한다. 【속악(俗樂)과 잡기(雜伎)를 사용한다. 뒤에도 이와 같다.】 술이 다섯 순배 들면, 사옹 제조가 대선(大膳)을 올리고, 음악이 시작된다. 집사관이 여러 노인의 선(膳)을 설치하고, 이를 마치면 음악이 그친다. 사옹 제조가 앞으로 나아가서 안(案)을 걷어 치우면, 집사관이 여러 노인들의 탁자(卓子)를 걷어치운다. 【여러 노인들이 청색 보[靑]로 써 찬(饌)의 남은 것을 거두어 싸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나온다.】
배례 대전환궁 解嚴	다방제조 전하 집사관 노인	봉례랑이 여러 노인들을 나누어 인도하여 모두 배례하는 자리로 돌아간다. 통찬이 “국궁(鞠躬), 배(拜), 재지(再至), 흥(興), 평신(平身)하라.” 고 창(唱)하면, 여러 노인이 국궁하는데, 현가에서 서안지악(舒安之樂)이 시작되고, 절하고 한 번 앉았다가, 두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그전대로 펴면, 음악이 그친다. 판통례가 서문을 지나 어좌 앞에 나아가서 부복하고 끓어앉아 예를 마쳤음을 아뢰고는, 부복하였다가 일어나내려와서 그전 자리로 돌아간다. 협률랑이 끓어앉아 부복하였다가 휘를 들고 일어나고, 공인이 축을 두드리며, 현가에서 융안지악(隆安之樂)이 시작된다. 전하가 자리에서 내려와 여를 타면, 산과 선으로 시위하기를 때의 의식과 같이 하고 사정전으로 돌아간다. 협률랑이 끓어앉아 휘를 가로 눕히고는 부복하였다가 일어나고, 공인(工人)이 어를 긁어서, 음악이 그친다. 봉례랑이 여러 노인들을 나누어 인도하여 나간다. 판통례가 부복하고 끓어앉아 해엄(解嚴)을 아뢰면, 병조에서 교지(教旨)를 받들어 의장(儀仗)을 해산시킨다.

중의례로 성립되어갔다. 고려시대에 양로 사물(賜物) 행사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고려시대의 양로연에 관해서는 「노인사설의(老人賜設儀)」에서 보면 효행자에 대한 포상 행사와 더불어 시행되는 것이 상례였다.

조선시대에는 고려시대에 설시(設施)된 양로연회가 한층 범률화·제도화되었고, 정치·사회적으로는 기로정책의 다양화와 더불어 국가적 중요행사로서 비중을 더해갔다. 양로연을 단순한 연회가 아니고 엄격한 의례 절차에 준하여 거행되었고 특히 양로의 뚜렷한 의미를 부여하였다.

1. 양로연의 주최와 종류

양로연은 왕이 주관하고 일반 서로들을 대상으로 하는 양로연과 중궁이 주관하는 경우는 대개 여로(女老)들을 위한 양로연이었다. 그리고 왕과 왕비가 함께 주관하여 남녀 서로(庶老)가 모두 참석시켜 대대적인 규모로 개최되기도 하였다.

한편 지방에서 열리는 양로연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는데 왕이 지방을 순행하면서 양로연을 베풀기도 하고, 중앙의 고관이 업무로 지방에 머물면서 양로연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지방 수령의 주관하에 주·부·군현(州·府·郡縣)을 단위로 소재 관청에서 개최하여 소재 관청이나 향교 등의 뜰에서 개최되었다. 특별히 지방에서 사물 공례를 할 때는 그 지방의 관아에서 때로는 죄수 도승지 및 좌우 승지를 보내어 이를 수행케 하였다.

양로연의 개최 장소에서 너무 먼 거리에 거주하는 기로들에게는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히 거주지인 거처에서 양로연을 열도록 배려해 주기도 하였다. 지방 양로연 중에서는 규모가 비교적 크게 열린 것은 개성부이고 개최 장소는 관아 혹은 경덕궁(敬德宮)이었다.

2. 개최 시기와 기간

양로연의의 제정은 이미 세종대에 이루어졌고 이후 역대의 양로연의는 세종 때 제정된 예에 따라 이루어졌다. 『경국대전』 연향조에 “매년 계추에 양로연을 행한다. 대소 원인(大小員人)의 나이가 80세 이상인 자가 잔치에 참석한다. 부인들에게는 왕비가 내전에서 잔치를 베풀다. 지방에서는 수령이 내외청을 따로 자리를 마련하여 잔치를 행한다.”고 하였다.

양로연의 개최 시기는 『예기(禮記)』, 『월령(月令)』, 『목민심서』 등의 기록에는 가을에 추수가 끝난 뒤 추위가 오기 전인 중추에 택일하여 행하였다. 조선조에서도 이를 본받아 중추에 택일을 하여 시행토록 하였다. 가을철은 대부분 곡과(穀果)의 수확철로 음식물이 풍성하고, 추위가 없는 계절이어서 노인들의 거동에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한 배려로 사료된다.

양로연의 설연(設宴) 기간은 대개 1일인데, 지방이나 대대적으로 열릴 경우 3, 4일씩 계속한 적도 있다. 한편 설연이 번거롭거나 유고하여 기로들이 봉연하지 못했을 때는 사물, 공궤로서 대체하였다. 양로연이 개최되었더라도 잔치를 끝낸 다음 어육(魚肉)이나 주육(酒肉)과 포백(布帛)을 내리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양로연 중에 가자(加資)도 행해졌다.

3. 양로연 참석 대상자

양로연 참석 대상이 되는 기로들의 연령은 고려 조는 80세 이상 노인들, 위독한 병자, 장애인들과 과부 홀아비 고아효손 등이었다. 조선조에 양로연에 참가 자격은 70세 이상이었으나 때로는 80세 이상으로 한정하기도 하였다. 세조 대에는 연령을 80세에서 70세로 낮추었다. 세종 조에는 80세 이상의 기로로서 자손이 없고 봉양할 자도 없는 이는 한성부에서 그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의식(衣食)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세종 조에는 너무 연로하여 거동이 불편한 부녀연로자들은 교(轎)를 타고 직접 중궁전에 들어오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들어와서도 시종인의 부축과 시중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였다.

1회의 양로연에 참가한 인원수는 대전에서 개최된 경우는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개 100-200명 정도이었고, 사서(士庶) · 부녀 · 유생 · 맹인 등이 모두 참석하는 합동연회일 경우는 300여명이 넘는 대규모 연회이었다. 가장 참석자가 많았던 양로연은 세종 17년(1435) 중궁 양로연에는 350명이 참석하였고, 세조 원년(1456) 대명전 양로연은 288명이 참석하였고, 다음해의 개성부 양로연에는 300여명이 참석하였다. 성조9년(1478) 명륜당에서 열린 국학양로연은 노인 280명과

성균관 유생들이 함께 참석하였다. 그리고 기록상 최대 규모의 양로연은 정조19년(1795) 낙남현에서 개최된 양로연으로 노인 374명과 그 외의 시신들이 많이 참석하였다.

4. 양로연 찬품

조선시대에 양로연 행사 때 연상(宴床)을 차릴 때 80세 이상이면 그 찬은 네 접시로 하고, 90세 이상이면 여섯 접시로 하여 연세가 많은 노인들을 더 정중한 많은 음식을 배려하였음을 알 수 있고, 비록 흥년일지라도 궁촌(窮村) 노인에 대하여는 연악(宴樂)을 허락하고 상경이 어려운 기로에 대해서는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혜출(惠恤)토록 하였다.

그리고 정조 10년(1795) 낙담현 양로연에서는 임금이나 서인이나 똑같이 두부탕(豆泡蕩), 편육(片肉), 흑태찜(黑太蒸), 실과(實果)의 4가지를 올렸다. 두부탕 등 3가지 음식들은 모두 부드럽게 익혀서 연세가 든 노인들이 먹기에 적합하게 하고, 두부 · 고기 · 콩 등 모두 단백질이 풍부한 영양 식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5. 양로연의 실행기록

조선시대의 『조선왕조실록』, 『기사지』, 『증보문헌비고』 등의 기록에서 실행된 양로연은 80회 정도이다. 조선시대에 전기인 세종에서 중종 조는 궁중의 양로연이 비교적 활발하게 개최되었고, 재위 왕별로 살펴보면 세종은 재위 31년간 중에 12회, 세조는 13년간 재위 중에 18회, 성종은 25년 재위기간 중에 21회, 연산군은 12년 재위 기간 중에 7회, 중종은 23년간 재위 기간 중에 12회 개최였다. 선조에서 인조 대에 걸쳐서는 양로연이 실행된 기록이 거의 없는데 이는 왜란과 호란으로 인한 정치 사회적 혼란 때문으로 추측된다.

조선조 후기에는 조선 전기에 매년 행해지던 풍정 진연 회례연 같은 잔치가 거의 행해지지 않고 회갑연 같은 특별한 날에만 행해지는 가운데 노인들에게 음식이나 물건을 하사하고 양로연 잔치가 궁중에서는 가뭄이나 재해 등의 이유로 행해지지 않았지만 지방에서 양로연 잔치를 개최하거나 실질적으로 노인들을 구휼하는 정책이 행하여졌다.

V. 문 현

김두진 외(1997) : 조선시대 양로연의례와 어연의례의 연구. 문화재관리국 서울.

박상환(2000) : 조선시대 기로정책 연구. 혜안 서울.

<고문현>

한우근 등(1986) : 역주 경국대전(經國大典) 주석편, 정신
문화연구원, 228쪽.

정약용 원저, 민족문화추진위원회 역(1998) : 목민심서(牧
民心書) 권3, 애민 6조 제1조 양로조. 솔출판사 서울.

유형원 원저, 북한과학원 고전연구실 역(1991) 반계수록
(磻溪隱錄, 1770) 권 제26, 속편 하 양로. 여강출판사 평양.

『고려사』 권3, 世家 성종 9년 9월조.

『고려사』 권68, 禮志10.

『고려사』 권3, 世家 성종 10년 추7월조.

『고려사』 권68, 제22권 예10 嘉禮, 老人賜設儀.

『기로지』 권9, 무편(戊偏) 사연(賜宴)조.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태조대왕 66년 8월조.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고국원왕 2년 2월조.

『삼국사기』 백제본기 다루왕 11년 10월조, 비류왕 9년 2
월조.

『삼국사기』 신라본기 성덕왕 17년 2월조, 경덕왕 14년 7
월조, 경덕왕 13년 7월조.

『증보문헌비고』 권76, 예고23 연례(誕禮), 경종 19년조.

『증보문헌비고』 권83, 예고(禮考)30 양로, 중종 12년 7월조.

『증보문헌비고』 권83, 예고30 양로, 광무 6년 12월조.

『증보문헌비고』 권83, 예고30 양로, 세종 17년조.

『증보문헌비고』 제83권, 예고(禮考) 30.

『원행을묘정리의궤』 권4, 친품조 중 양로연 친품.

『태조실록』 권1, 원년 7월 정미.

『세종실록』 권55, 14년 정월 정묘.

『세종실록』 권55, 14년 정월 병자.

『세종실록』 권57, 14년 8월 경자.

『세종실록』 권57, 14년 8월 정미.

『세종실록』 권121, 30년 8월 병자.

『세조실록』 권22, 6년 11월 무진.

『성종실록』 권75, 8년 정월 계묘.

『세조실록』 권5, 2년 10월 정유.

『정조실록』 권42, 19년 5월 을묘.